

광주지방법원 2021. 5. 11 선고 2020가단51967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1나58843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5. 11 선고 2020가단519678 판결

전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1. C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용태

변 론 종 결 2021. 3. 9.

판 결 선 고 2021. 5. 11.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C와 E 사이의 2019. 6. 26. 금전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D은 원고에게 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E의 연대보증 하에 2012. 9. 28. G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의 원리금채권이 H 유한회사를 거쳐 2020. 2. 25.경 원고에게 양수되었고, 2019. 12. 31. 현재 그 채권액은 1,244,567,937원(대출원금 잔액 795,102,942원 + 연체이자 잔액 449,464,995원)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소외 회사 및 E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20차전10551호로 위 채권 원리금 549,464,995원(위 대출원금 잔액 중 1억 원 + 위 연체이자 잔액) 및 위 1억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2020. 3. 31.자로 원고가 구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그 후 확정되었다.

나. 피고 C는 E의 배우자이고, 피고 D은 피고 C 부부가 다니는 교회의 담임목사로 봉직하다가 2012. 12. 30.경 퇴임한 자이다.

다. E 소유의 광주 남구 I아파트 J호(이하 'I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5. 22. 채권최고액 7,000만 원, 채무자 E으로 한 피고 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그 후 피고 D은 광주지방법원 K, L(중복) 부동산경매절차에서 I 아파트를 352,890,000원에 매수하고 2016. 2. 24.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매수대금 중 7,000만 원은 피고 D이 앞서 본 근저당권자로서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배당금 7,000만 원으로, 2억 2,000만 원은 피고 D이 2016. 2. 24.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M조합로부터 대출받은 2억 2,000만 원으로 조달한 것이다.

마. 한편 피고 D는 2015. 10. 2.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광주 동구 N아파트 O호(이하 'N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같은 해 10. 12.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10. 같은 해 6.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등기부상 거래가액은 2억 8,000만 원이다.

바. 현재 피고 C 부부는 당초 거주지였던 I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고, 피고 D 또한 당초 거주지였던 N 아파트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 을 제5, 6,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C는 2019. 6. 26. 채무초과 상태인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증여받아 위 돈을 앞서 본 N 아파트의 매수대금 중 일부로 사용하였다.

그렇다면 피고 C와 E 사이의 위 2019. 6. 26. 금전증여계약은 E에 대한 금전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므로, 위 금전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 명의 P은행 계좌로, 2019. 6. 26. E 명의로 1,000만 원이 입금되었고, 2019. 6. 27. Q 명의로 4,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 2019. 6. 27. 위 돈 합계 5,000만 원이 위 피고 C 명의 계좌에서 피고 D 명의 G은행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 D이 I 아파트를 취득한 시기 및 경위, N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기, 피고들과 E의 관계, 피고 C 부부와 피고 D의 주거지, E, Q, R, S

사이의 금전거래내역 등 앞서 든 증거자료 및 을 제8,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D이 앞서 본 바와 같이 I 아파트를 취득한 후 다주택 소유자가 되자 이에 따른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피고 D이 소유하고 있던 N 아파트의 소유 명의를 피고 C 명의로 이전하고, 다만 진정한 거래관계로 보이기 위해 피고 D이 대출받아 마련한 5,000만 원을 이용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의 매수대금이 지급된 것 같은 외관을 작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앞서와 같이 E 명의로 1,0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사정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E이 피고 C에게 위 1,000만 원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와 같이 E이 피고 C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한 것은 앞서 본 외관 작출을 위한 것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E이 2019. 6. 26. 피고 C에게 1,000만 원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1)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D은 E과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E으로부터 매수자금 132,890,000원(매수대금 352,890,000원 - 피고 D이 대출받은 220,000,000원)을 받아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경매절차에서 I 아파트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 D은 법률상 원인 없이 그 매수자금 상당액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써 E에게 위 매수자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E에 대한 금전채권자로서 무자력인 E을 대위하여 위 돈 중 1,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들 및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피고 D이 I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E으로부터 매수자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D이 배당받은 7,000만 원은 허위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은 것이고, 따라서 피고 D은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써, 당시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 D의 후순위 가압류권자로 위 돈을 배당받지 못한 H 유한회사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H 유한회사로부터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위 배당금 중 1,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4, 10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갑 제8호증의 기재를 비롯하여 제출된 증거들 및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피고 D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배당받은 7,000만 원이 허위의 근저당권에 기한 것으로서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된 부당이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찬우

1)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가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나, 원고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가 지정한 순서에 따라 판단하기로 한다.